고소 고발장

1. 고 소 인 :

주 소 : 연락처 :

2. 피고소인: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주 소: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정의당 당대표] 심상정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5F

[국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인태

주 소 :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영등포 경찰서 경찰서장] 박성민

주 소 : (0725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 피고소인은 공인으로 해당처를 통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바 미기재

3. 고소내용

헌법의 가치가 존엄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가 당연 법에 명시하지 않은 권리조차 보호되도록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는 바국회사무처로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민주적 국회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민주적 국회의 가치와 역할에 위배되는 비민주적 행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국회에서 도서관 열람증까지 확인되었음에도시민의 정당한 출입을 막았고

이를 동조한 경찰이 나라의 예산처리에서의 국회의 불법과 부정을 인식하고 순수한 애국의 마음으로 그 옳지 않음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의 권리로 국회를 찾은 시민을 민주주의체제의 경찰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반하여 무장되지 않은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시민에 욕설을 서슴치 않는 등 비정의, 비민 주적 미개하고 불합리한 경찰행정을 함에 이를 목격하고 증거를 취득하였습 니다.

또한 그 시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내사를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자진 출두해 자진 조사 받고 경찰의 비민주적 태도와 위법성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하고자 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행정, 업무와 역할 미숙지, 해당청 별로 다른 고지 내용, 앞뒤 다른 얘기로 회피일관인 부분에 도저히 대한민국 민주경찰의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인식인바 비민주적, 비선진적, 비효율적 행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고려되어 청문감사실에 이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선진 자유민주주의의제도에서 고소 외에는 개선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고지받아 이렇게 비효율적 방법으로 해당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절차 외 더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될 공정하지 않은 제도 말고 합리적인 다른 제도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정권의 하수가 아니며 정권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의 가치에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상황에 맞게 독립적 독자적으로 그 역할과 업무를 파악하고 행정해야하며 법을 전공하지 않은 국민이 매 순간 법을 해석할 수 없는 바 잘못된 부분이 있을시계도나 홍보의 고지로 최소한 개입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한쪽에 편향적인 집행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경찰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주의 체제에서 법에 저촉없이 살고 성장해온 한 시민의 보편적 상식입니다 이 고소로 국회의 불법에 목소리를 내는 순수한 시민이 왜 폭도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보편과 상식, 그 상황 의 합리성으로 법리해석과 검토 바랍니다.

위 사항으로

정당한 정당의 활동과 시민의 국회이용의 권리를 탄압한 경찰, 국회사무처, 해당 정당을 고소하고

덧붙여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무장하지 않은 국민을 폭도로 규정하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없음을 드러나는바 국민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나쁘기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추가적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왜 시민이 바쁜 시간에 나라를 걱정해 국회를 찾았는지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 폭도라는 용어를 서슴치 않게 구사할 수는 없다고 이성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고소로 위 사항에 대해 경찰은 내부적으로 공정성에 입각한 조사와 수사를 하여 불성실한 업무대응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개선을 바랍니다.

518 무장세력은 민주화이고 국회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정당한 정당행사에 참석한 무장하지 않은 애국시민은 폭도라니 그 이중성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은 가장 최우선에서 법을 지켜야할 국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기에 그에 항거하는 국민이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내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회, 국회의원,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4. 증거물

4-1) 국민의 권리에 대한 헌법조항

(어떤 법보다 헌법이 상위법으로 그 준엄함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4-2) 경찰 112 신고 녹취 [경찰 내부 녹취 참조]
- 4-3) 경찰 통화 목록과 녹취 [USB 참조]

